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·금융·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